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446

발의연월일: 2024. 8. 30.

발 의 자:정준호·이춘석·임호선

김태선 • 조승래 • 정성호

윤후덕 • 박용갑 • 손명수

전용기 • 이학영 • 김남희

양부남 • 박균택 • 어기구

의원 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부 학생 사이에서 학교 내 교 직원 등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성적 영상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이 제작·유포되고 있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음.

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 격권 침해일 뿐 아니라 방기할 경우 학교폭력의 새로운 양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됨.

그러나 현행법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로 심리상담, 요양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 삭제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 방안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.

이에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성적 욕

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·영상물·음성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시켜 피해를 입힐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하여 관할청이 삭제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개인의인격권을 더욱 보호하고 딥페이크영상 등 음란물을 근절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) ① 관할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·영상물·음성물(이하 이 조에서 "촬영물등"이라 한다)을 정보통신망에 유포시켜 피해(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)를 입힐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은 관할청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·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개 정 안 제20조의2(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) ① 관할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 한 촬영물·영상물·음성물(이 하 이 조에서 "촬영물등"이라 한다)을 정보통신망에 유포시 켜 피해(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)를 입힐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 을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은 관할청에 촬영물등의 삭제를
	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